

농민권리선언포럼 제6차 회의(제2차 현장토론회)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재난과 인권 : 새로운 사회계약>

식량권 세션
재난 시대의 식량권(Right to food),
그리고 농민 권리

- 일시 : 2021년 10월 9일(토) 오전 10~12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실시간 영상회의 병행)

공동주최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Ⅵ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Ⅵ 공익법률
센터 농본 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Ⅵ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재난 시대의 식량권(Right to food), 그리고 농민 권리

- 일시 : 2021년 10월 9일(토)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실시간 영상회의 병행)
- 공동주최 :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대통령직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시간		프로그램	내용
10:00-10:20	20'	개회사 내외빈소개 축사	사회 : 김정열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 축사 :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좌장 :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
10:20-11:00	40'	발제	「세계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식량 체계」 Michael Fakhri [유엔인권이사회 식량권특별보고관]
11:00-11:10	10'	토론1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의 운동」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 부소장]
11:10-11:20	10'	토론2	「여성농민 권리의 현재와 이후 방향」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11:20-11:30	10'	토론3	「농민권리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 박경철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11:30-11:40	10'	토론4	「광주전남지역 농민의 권리 현황 - 2020년 재난과 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 -」 김원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11:40-11:50	10'	토론5	「기후, 건강, 식량안보를 위한 먹거리전환」 조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대표]
11:50-12:00	10'	질의응답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2:00	-	폐회	마무리 및 기념촬영

축사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재난시대의 식량권, 그리고 농민권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식량권 세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포럼의 세션을 준비해주신 윤병선 유엔농민권리선언포럼 대표님을 비롯하여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고송자 회장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김재우 회장님,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김정열 대표님 등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유엔인권이사회 미셸 파크리 식량권특별보고관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으로 2018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코로나 19와 기후위기로 유래 없는 먹거리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간 물류 이동이 제한되고 이상기상으로 식량 생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농업 생산 여건이기에 국민의 먹거리기본권은 물론 농민의 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세계인권도시포럼이라는 큰 국제행사를 통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과 국가의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의무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세계인권도시포럼 식량권 세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의 관점에서 많은 대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세계 위기 상황에서의 인권에 기반한 식량 체계

마이클 파크리(Michael Fakhri) _유엔인권이사회 식량권특별보고관

목차

1. 세계 식량 체계 - 세계식량정상회의
2. 유엔농민권리선언 - 식량 해결을 위한 체계
3. 식량권의 향후 방향 - 영역적 시장(territorial market)의 개념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세계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엔농민권리선언으로 알려진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엔드랍이 어떻게 하면 식량위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틀이 있을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을 이야기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식량권이 앞으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때 저는 영역적 시장(territorial market)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다룰 것이고요.

1. 세계 식량 체계 - 세계식량정상회의

9월 23일 세계식량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들이 단순히 ‘식량은 농업정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식량은 시스템에 관련한 것이다.’라는 것을 정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량생산자나 공급자나 사용자 모두가 그리고 다양한 정부들, 지역정부, 도시정부, 중앙정부 그리고 국제적인 정부 모두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규범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량권과 유엔농민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식량 시스템에서는 식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계식량정상회담

에서도 나왔지만 코로나-19가 식량 등 모든 부분에 심오한 영향을 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와 국민들이 코로나에 대응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응했던 것처럼 이것이 결국에는 식량시스템을 혁신을 해나가는 데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총회가 내년에 개최 예정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일부 정부국가나 민간사회가 식량안보나 식량의 역할을 다시 바라보면서 식량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체계적인 그리고 다층적인 대응이 식량 부분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중요성과 의미

그런 점에서 유엔농민인권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질의 식량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간다라는 건 뭔가 먹을 만한 양질의 음식을 구한다는 뜻이 됩니다. 양질의 식량을 구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가 되었든 어부가 되었든 그냥 일반 노동자가 되었든 목축인이 되었든지 간에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음식을 구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사실 이러한 식량을 생산하는 일은 생존에서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을 잃게 되면 전 세계의 인구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중요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해외 이주노동자이거나 제대로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을 위한 땅에 대한 접근권

더욱이 땅에 대한 접근을 보면, 상황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식량을 키우고 동물도 키우고 여러가지 활동을 땅에서 하지만 그에 대한 접근성은 공정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 대한 접근성이 결국에 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토착인이나 그리고 농부가 농토에 접근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만약에 식량을 만들어내는 사

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돌보지 못한다면 식량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농민권리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은 식량을 하나의 시스템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농민인권선언이 중요한 의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규범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농부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민은 식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식량 체계 자체를 우리가 신경쓴다라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엔농민인권선언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들이 이 법적인 권리를 다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면서 또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이나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본틀이 됩니다. 또 유엔의 토착인을 위한 권리헌장에도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착인에 대한 보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틀이 됩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의 하나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가 어떻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모두를 위한 농업체계 그리고 식량체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지나 천연자원, 식량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양질의 식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에 관한 것, 참여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장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에는 권한의 문제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공정하게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한국에서는 유엔농민인권선언을 국제법에 따라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조치에 따르는 것을 꺼리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정에 입각한 정신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틀도 같이 다뤄보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흥미롭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한 것은, 한국은 간접적으로 이 법 체계 안에 식량권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국제사회권리법을 한국의 편법 안에 녹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시 한 번 한국의 법적인 체계 안에서 식량권에 대해서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무적입니다. 소규모농업을 하는 소규모농이나 이런 분들이 식량체계의 핵심의 중추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혼합하게 되면 가장 좋은 방식으로써 정부가 식량권의 의무를 전 국민들에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엔농민권리선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권이 다른 여러 권리 중의 하나로 들어가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아주 상세하게 식량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법 안에 식량권이 들어가 있고요. 유엔농민권리선언은 하나의 그 법을 보완하는 역할, 이미 가지고 법적 틀 안에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정부나 중앙정부까지 이미 유엔농민권리선언을 활용을 해서 한국의 법에 따른 식량권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전체적으로 실현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그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어느 정도는 구현하고 있는 것이 더 잘 구현할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토론의 개념을 조금만 바꿔서 식량권을 만드는 것에서 식량권과 그리고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실현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꾼다면 정부가 어떻게 인권을 바탕으로 정책을 짜야 하는지를 유엔농민권리선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지금 유엔농민권리선언을 어떻게 어떤 차원에서부터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3. 식량권과 무역

식량권과 무역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각각 어떤 농민그룹과 시민사회가 한국의 많은 무역정책이 있어서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역정책이 오늘날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식량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국제무역에 대해서 전혀 회담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차원의 식

량정책을 무역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다룰 수 없습니다. 초점이 내부의 식량 생산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적 무역협약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회담의 일부의 프로세스에서 WTO의 사무국에서 쓴 식량권에 대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1년에 식량에 관해서 대화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나 국제조직이나 또는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가들도 이 대화에 참여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것은 2007년에 식량위기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WTO의 사무국은 그 당시에 식량의 정책을 무역정책으로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만 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재 WTO의 사무국은 마침내 사회적인 움직임을 인정하고 이것이 1994년 이후에 있었던 식량과 환경이 굉장히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WTO의 대화가 이것은 어찌 보면 사회적 움직임의 하나의 성공의 결과라고도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보자면,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펜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차원의 식량체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한 식량체인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사회시민사회나 전문가 또는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지역 차원의 식량 생산과 그리고 푸드체인을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펜데믹이 오기 전부터도 긴 식량의 보급의 체인망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여러 곳에서 식량자원을 고갈시켜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렴한 식량 재료를 사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가장 좋은 물건이 어디서 생산이 되는지, 글로벌 가치 사슬은 점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의 비즈니스 기업이 인권을 위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각 가치사슬마다 책임을 지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적인 기업, 대중적인 관심이 이러한 부분에 모아지고 있으면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제는 가치사슬을 좀 짧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문제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치사슬이 짧아지더라도 결국은 이것은 인권이나 환경문제를 기업이 위치한 국가로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사슬이 짧아지게 되면 대기업이 좀 더 그들의 시장력을 좀 더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 모든 역동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새로운 무역정책, 무역정치로 발현이 될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농업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처음부터 제도화 된 이러한 농업무역 정책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차이가 있다면 자유무역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아주 우세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무역은 이제 좀 열세해졌습니다. WTO는 현재 더 이상 분명한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WTO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는 이제 일관적인 식량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엔식량체계 정상회담도 식량과 관련한 무역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아이디어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세 번의 보고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무역을 식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WTO의 농업 관련한 협약을 종식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WTO가 하는 일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한 번에 한 개씩 차근차근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식량에 대해서 더 큰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무역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약 우리가 WTO에 농업규약을 종식한다면 법적인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새로운 협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식량협약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의 푸드체계를 지원해야 될 것이고, 자유무역을 또는 경제성장을 최종적인 목표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완전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그 지역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레바논 출신입니다. 레바논의 경우에 농민이나 어민들은 충분히 그 레바논 시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식량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레바논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많이 소비합니다. 강과 바다에서 생산된 자체적인 생산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원하는 시장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식량농업위원회에서 만든 것을 보면 거기에서 좀 더 포용적인 전 세계적인 농업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저는 주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더 지역에서 생산된 식량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더 지역에서 만들어진 생산시스템을 강화하고, 가치사슬을 짧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로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 그리고 수직적인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처나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평적으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세계에서 지방에 존재하는 시장은 농산물 시장은 대부분 아주 소규모 농민들한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농들은 공급을 하는데 대부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의 식량의 70%를 생산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근과 영양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소규모 영세농민들이 지역에 또는 국가 차원의 시장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떤 자금지원이라든가 인프라나 적절한 기술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세계식량안보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 영역적 시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사람들이 실제 이미 그들의 식량을 소비하고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영역시장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우리가 글로벌한 시장이나 또는 지역 차원의 시장이나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데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설 수도 있고 시골일 수도 있고 도시에서 분쟁하는 것 또는 도시 외곽부에 있는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아주 훌륭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영역적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적 시장이라는 것은 먼저 어떤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어떤 특정한 지역 또는 지방 차원의 농업 체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량의 공급사슬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스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역적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즉, 포용적이고 다양한 농업 그리고 농산품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농산품을 제공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영역적 시장은 포괄적이고 전체를 아우릅니다. 다양한 사회문화경제적 기능을 특정영역 내에서 수행합니다. 영역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상을 해 줍니다. 즉, 소규모 농민들도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적 시장은 순환적입니다. 즉, 영역적 시장 내에서 그 시장 내에 부를 창출하고 그 부를 그 안에서 다시 재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영역적 시장은 합법적입니다.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시장일 수도 있고 또는 비공식적인 시장일 수도 있고 그 중간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특별히 영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세금을 이리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역적 시장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입니다. 즉 일종의 공통으로 서로 합의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한 규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역적 시장은 연대의 원칙 하에 움직일 것입니다. 영역적 시장은 구매자와 생산자가 함께 모여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을 생산해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연대의 원칙에 근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권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인 식량협약은 보다 더 어떻게 이러한 영역적 시장을 확대하고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어떤 우리의 시장, 기존의 영역적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바꾸나갈지 노력해야 합니다. 이 영역적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어떤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태라든가 생산물이나 어떤 물고기를 어떤 것을 거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쌀이나 밀 같은 주요 상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 정부를 포함해서 이러한 무역협상을 하는데 같이 동참하게 해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식량공급을 할 때 이 영역시장을 생각해 보면 학교의 급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영역 내에서 어떻게 식량을 공급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것이 결국은 제도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각각 다른 기존의 협약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동시에 영역적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고 식량권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약을 만들어나갈 때 많은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대화를 할 때 무역과 식량권을 논의할 때에 이것이 WTO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국제적인 어떤 플랫폼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든가 또는 생산자협동조합 또는 소비자협동조합과도 같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량 체계 내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들에게는 분명히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원칙에 기반할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토론에서 더 많은 아주 활발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토론

먹거리 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한국의 운동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송원규

‘식량주권’이 쏘아올린 먹거리 기본권 운동의 불꽃

2004년과 2007년에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서 <식량주권 대토론회>가 열렸다. 2004년 토론회는 비아 캠페시나의 주최와 회원조직인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주관으로 열렸다. 그리고 2007년 토론회는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농민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더 많은 논의와 구체적 행동전략을 마련하는 논의의 틀로 국민농업네트워크 건설”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¹⁾ 이후 식량주권 실현을 전면에 내세우는 연대조직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식량주권에 대한 다양한 사회운동 진영의 토론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식량주권을 한국적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중심 의제이자 운동을 규정하는 틀로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WTO 농업협정,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중심이었을 때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틀을 벗어난 대안적 농정의 방향성 제시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10년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중적 학교급식 운동이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세계화된 먹거리 체계라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지만 지역 단위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작은 규모이지만 집단적으로 협력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로컬푸드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중적인 먹거리 운동의 시작이었다.

약 10년여의 먹거리 운동의 다양한 실천과 시행착오 속에 최근 ‘먹거리 기본권’은 우리나라 대안 먹거리 운동의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필자는 감히 이를 식량주권을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중심 축으로 재해석, 재구성한 결과물로 평가한다.

1) 정명진. 2007. 07. 07. “한미FTA저지투쟁, 식량주권 국제화 위해 중요하다”.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2>

유엔 농민권리 선언과 한국 농민운동의 새로운 길찾기

농민운동 진영에서는 아직 식량주권을 한국 사회에서 운동의 내용으로 끌어내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된다. 농업·농민·농촌의 위기 속에서 먹거리 체계를 둘러싼 사회적 중심이 소비 쪽으로 많이 옮겨간 상황에서 운동의 담론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아 캄페시나가 제기한 농민권리의 담론이 장기간의 운동적 실천을 통해 2018년 12월 유엔 농민권리 선언의 채택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다. 농민권리는 아직 농민운동 내에서 이해가 상이하고 추상적이고 폭이 넓은 선언문의 내용을 구체적인 운동의 과제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와 농민운동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잡이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때로는 농민, 때로는 소농으로 번역하고 있는 peasant는 단순히 규모의 문제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농민권리 선언문에 담겨 있는 생태적 농업(농생태)에 대한 지향성과 산업적 농업에 대한 저항성 등 그 정체성에 중심이 있다. 최근 농민운동과 농업계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농민의 규정’도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0년 이상의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속에서 생존과 적응을 위해 규모화의 길을 걸어온 다수 농민들은 과거의 ‘계급성’의 관점에서 동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대안적 농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정체성을 통해 다시 사회운동으로서 농민운동의 중심을 다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과정에서 농민의 사회적 역할, 농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 여성농민의 저항과 사회적 지위 강화 등 운동의 의제 발굴과 대안적 농업의 구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민권리 보장 운동,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기

먹거리 기본권과 농민권리는 생태농업과 농민·시민의 권리 중심의 접근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식량주권의 정의인 “식량주권은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먹거리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이며, 또한 민중들이 그들의 고유한 농업·먹거리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에서 생산과 소비의 상호보완적인 두 축을 지니고 있다. 먹거리 기본권 운동은 지역 단위에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과 국가 단위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해 제도화의 길에 들어

서고 있다. 농민권리도 ‘농민기본법’ 등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운동의 소통과 상호협력으로 한국 사회에서 다수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대안 농업·먹거리 운동으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이후 정책 방향

오미란(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

1. 한국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

여성농업인들의 권리는 성불평이라는 기본 현상을 중심으로 세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나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비해 생산수단(토지, 기술 등)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과 더불어, 다른 하나는 여성농업인들의 노동가치에 대한 저평가 혹은 무상노동화에 대한 저항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에서 성차별에 해소에 대한 요구이다.

2016년 UN여성지위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 토지 소유자는 13% 이하이고, 남성과 임금의 격차는 23%에 이르러 토지와 정보, 기술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이 취약함을 지적하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토지소유율은 28%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의 성별격차(34%)는 1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큰 국가이다.

식량권 문제를 인권문제로 결부시켜 해결 방향을 식량체계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Michal Fakhri 보고관의 글에서 식량권에 대한 핵심원칙과 8가지의 영역에 대한 지적은 지역푸드시스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식량권을 단순히 기아의 해소로 접근했지만 식량권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 공정, 접근,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장해서 정의하는 것은 여성농업인의 권리에 있어서도 많은 실천적 확장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2018년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농민 및 기타노동자의 권리선언(UNDROP, 이하 농민권리선언)이 발표되었고 선언 27개 조항 중 제4조2)에 여성농업

2) UN농민권리선언 제4조 1항 국가는 여성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

인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권리의 내용으로 시장가치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농업인 노동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고려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반적 차별 해소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토지와 자연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과 토지 및 농업개혁과 재정착 계획에 있어서 동등, 또는 '우선'적 대우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통계이다. 현재 한국에서 여성농업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8.4%이고 농업분야 남녀임금격차는 34.8%로 OECD평균인 12.8%에 무려 22%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특성으로 품앗이 노동과 농업임금 노동은 남성은 25% 감소('70년 65%→2015년 40%)한 반면, 여성은 오히려 25% 증가('70년 36%에서 2015년 60%) 하였다. 즉 단순노동, 비숙련 노동의 여성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지소유 비중은 28.2%로 낮고,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참여율 10.8%, 농협조합원 가입율 33.3%, 조합장은 0.7%로 생산조직 참여에 또한 낮은편이다. 생산기반에 있어서도 논은 99%가 기계화 되어 있으나 밭의 기계화율은 68%에 머물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여성들의 이장비율은 9.4%에 불과하고, 마을개발위원장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농촌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증대했으나 지위의 불일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표> 여성권리 현황 주요지표

구분	여성	남성
생산수단 접근성	28.2%	72.8%
성별임금 격차	65.2%	100%
품앗이 노동	60%	40%
농협 조합원비율	33.3%	66.7%
농협 조합장	0.7%	99.3%
이장비율	9.4%	91.6%

자료: 농림어업인구총조사(2015),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농업분야 성인지 통계(2021) 참조

고,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그들이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며, 농촌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여하여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그들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항) 국가는 성평등의 기초위에 농촌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여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농촌 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a. 모든 수준에서 개발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 등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c.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2. 여성농업인의 권리향상을 위한 방향

인권은 보편적이며 상호연계성이 중요하다. UN농민권리선언의 실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정치적 동등한 참여의 보장, 노동가치에 대한 법적·사회적 가치 인정, 직업적·사회적 차별의 종식이 필요하다. 또한 식량권을 논의할 때 여성농업인들의 생산 및 식품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율이 낮은 한국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논농사를 제외한 밭작물, 과수, 채소, 축산 등의 대부분의 먹거리 생산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생산수단과 기술에 대한 접근권, 참여의 보장, 지역푸드플랜 등 먹거리 체계, 농업거버넌스, 로컬푸드 등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농업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은

첫째, 법적·사회적 지위의 보장이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법적지위는 여성농업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함과 그에 상응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업인 규정과 농가경영체등록법 상의 경영체(부부, 또는 가족공동) 구성 및 공동경영주에 대한 법적 지위와 권한의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참여의 보장이다. 농업영역이든 지역사회 영역이든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대표성을 갖는 참여권의 획득이 필요하다.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작목반 포함) 등에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농가 1대표성의 참여 기준을 개별선택과 개별 대표성이 인정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생산수단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이 필요하다. 땅에 대한 권리, 농지연금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농업기술이나 정보 등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접근권, 이용권 등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미래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내 문화의 개선

이다.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지불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돌봄노동은 이제 더 이상 무상노동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 마을내 무보수 돌봄 노동 역시 점점 사회화된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과 마을, 지역사회는 여성의 무보수 노동에 기대고 있다. 이제 가족,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방적, 의존적 관계망의 수평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UN 농민권리선언과 여성차별철폐조약은 여성의 권리를 잘 담고 있다. 식량권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담아 식량체계 수립시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건강한 먹거리가 여성농업인들의 손과 땀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먹거리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여성농업인, 특히 고령과 소농 생산자들의 조직화·교육·시장참여로 연계한 지역푸드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

권리는 구호나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실천되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질적인 시스템 속에서 함께 움직일 때 체감될 수 있을 것이다.

농민권리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
충남도 농민의 소득권 보장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철(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농특위 농민권리선언포럼 위원)

1.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2014)에 농민인권정책
처음 수록

○ 충남도가 2014년에 수립한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 우리나라 인권정책 기본계획으로는 처음으로 농민인권 보장 방안 명시

○ 당시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 수립 시 농민(어민 포함)이 포함될 것을 요청

- 충남도는 농업지역이고 농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권리 보장을 위한 인권정책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청함

2. 농민인권의 핵심은 소득보장과 농지 보호라고 판단

○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필자는 농민인권 분야를 담당하면서 농민인권의 핵심은 소득 보장과 농지 보호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를 준비함

○ 연구 수행 중 유엔에서 농민권리선언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그 내용을 번역함. 그 중에서 농민의 소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안(2013. 6. 20)

제3조 생명권과 알맞은 표준생활을 누릴 권리

2. 농민은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

3. 농민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소득을 얻을 권리를 포함하는 알맞은 표준생활권을 갖는다.

- 당시 농민인권 분야 추진사업으로 낙후농촌지역 기본소득제 실시, 농지 보호 호민관(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음
 - 낙후농촌지역 기본소득제 실시: 기본소득 보장을 통한 농민의 안정적 생활권 보장
 - 농지보호 호민관(옴부즈만) 제도 도입: 토지를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보장
 - 그 외 우리농업알리미교사제 운영, 소외농촌지역 <문화·교통 바우처제> 실시, 면(동)단위 「마을환경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등도 함께 제시
-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 반영된 농민인권 분야 정책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제시
 - 1) 우리농 가치 홍보 확대, 2)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3)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실시, 4) 풀뿌리 마을환경 감시 강화, 5) 농민인권 교육 및 상담 실시
 - 제시된 정책 내용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업의 확대이거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어서 큰 진전은 없었음

3. 기본소득 연구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보장 제시

- 충남연구원 2015년 전략과제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의 필요성 제시
 - 연구를 통해, 농민, 농촌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 방안 마련
- 당시 충청남도에서는 도민권리선언 중 농민권리에 농민 기본소득 보장 권리 명시
 - 이를 근거로 농민기본소득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력

충청남도 도민인권선언(2014. 10. 13)	
제4장 일과 권리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4. 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통해 보편적 농가소득 보장 틀 마련

- 충남도는 2017년 기존 벼경영안정자금(287억 원)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198억원)을 통합(485억 원)해 전 농가에 36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농가소득 보장제도를 실시함
 - 사업의 목적은 벼농가와 밭농가의 형평성 제고, 소농 배려, 농업환경실천 증진 등임
-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됨

5. 충남도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통해 농가 기본소득 보장 토대 마련

- 충남도의회는 2020년 3월 농민단체, 연구기관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
 - 충남도의 위와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간 80만 원(최근 지자체 최고 액수)의 농어민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함
 -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전남 해남군이 2018년 12월에 처음 제정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2020.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어업인이 기본권을 누리
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어민수당은 현재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2022년에는 농어촌지역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농어민수당을 실행할 예정임
 - 농민수당, 농어민수당, 농어민 공익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한 형태로 농어가(민)에 대한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실시

<표> 주요 광역자치단체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 실시 현황(2021.9)

지자체명	명칭	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하반기 도내 참여 희망 6개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2022년 초 도내 인구 4천 명가량의 1개 면 선정해 약 5년 동안 주민 모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021년부터 농가(10만4천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충남도	농어민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16만5천 가구)당 연간 80만 원 지급 (상반기 40만 원, 하반기 40만 원)
충북도	농민수당	2022년부터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2022년부터 농어가당 30만 원 지급(지급액 인상 요구)
경북도	농어민수당	2022년부터 농가당 50만 원 지급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24만3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10만2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제주도	농민수당	2022년부터 농업인 1인당 40만 원 지급 예정
인천광역시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당 연간 60만 원 지급
그 외	농민수당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도 농민수당 도입 논의중

5. 향후 과제

- 농민에 대한 경제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 농민기본소득법안(대표발의 허영 의원)이 2021년 6월 국회에서 발의 됨. 농민기본소득이 법제화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제 실현

농민기본소득법(2021.6.22.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민권리를 인권관련 모든 정책에 반영 및 실천

- 지자체, 정부, 인권기관에 유엔농민권리선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 예를 들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지자체 인권정책 기본정책, 국가 인권선언, 지자체 인권선언, 국가 및 지자체 기관에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인력 배치

<표>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박경철, 2017)

정책 과제	세부 정책 과제	비고(실행 주체)
1. 농정의 틀을 사업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	1)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정책 도입	중앙정부(농림부)
	2)충남도 농업환경실천사업의 확대	중앙정부, 충청남도
	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전담조직 설치	충남도
2. 농민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	1)중앙정부의 농어업인의 삶의질 개선 관련 정책을 <유엔농민권리선언> 기준으로 재편	중앙정부
	2)충남도 차원의 농민인권 증진 시책 추진과 관리(모니터링)	충남도, 농민단체
	3)중요 농민인권 지표 관리를 위한 '충남형 농민인권 체크리스트' 마련 및 관리	충남도, 농민단체, 연구기관
3. 농민인권을 본격적으로 인권 논의의 장으로 확대	1)국가인권위원회 내 농민인권 담당 조직 및 담당관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2)농림축산식품부 내 농민인권증진담당관 설치	중앙정부
	3)인권관련 NGO 내 농민인권 논의 증진	인권관련 NGO단체
4. 법과 제도적 틀 마련	1)인권관련 법과 조례, 규정 등에 농민인권에 관한 내용 포함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2)인권증진 관련 계획 내 농민인권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정부
	3)충남인권센터의 적극적인 역할	충남도
5. 농민단체의 자율적 조직 구성과 활동을 촉진	1)농민인권 증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농민단체, 중앙정부, 인권기관 및 단체, 정당, 전문가 등
	2)'농민인권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농민인권 증진	농민단체 등 NGO
	3)농민단체 및 조직 내 인권교육 실시	농민단체, 충남인권센터 등

○ 농민기본소득과 연계한 농지 개혁 실행

-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 농지농용의 원칙 강화
- 농지전용 전용을 금지하고 승계농, 이농 등에 의한 농지 소유를 제한하며 도시민의 농지 매입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농지 전용, 부재지주, 임대차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농지 규제에 의한 손실은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확실히 보장함

유엔농민권리선언(2018. 12)

제2조1항. 국가는 여성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근절하고,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거해 그들이 모든 종류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며, 농촌의 경제·사회·정치·문화적 발전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참여하며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그들의 권한을 신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1항.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 선언 28조에 따라 개인적으로 그리고/또는 집단적으로 적절한 생활수준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공간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토지와 수자원, 연안해역, 어장, 목초지 및 삼림에 접근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권리를 비롯,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광주전남지역 농민의 권리 현황 - 2020년 재난과 개발로 인한 피해 사례 -」

김원숙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해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자연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작년 2020년은 봄철 냉해 피해, 54일간의 장마와 폭우, 태풍, 겨울 한파
와 폭설 등의 최악의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났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는 농민 개개인이 감당할수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자연 재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
한 복구비용 일부 지원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인 “농작물재
해보험”만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못한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받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지)는 제외된다

기본법에 의한 복구비 일부 지원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이
뤄지지 않아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38.9%로 나타나지만 품목별 편차가
심하다, 2018년 기준 사과(특정위험보장, 68.1%), 배(특정위험보장,
60.4%), 메밀(52.4%), 벼(37.3%) 등의 가입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차(9.3%), 고추(5.9%), 포도(5.3%), 옥수수(3.4%), 버섯작물(3.0%) 등
대다수 작물의 가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작년 구례에서 일어난 수해로 인해 축사가 무너지고 버섯사와 하우스가 붕괴되
고 논 밭둑이 무너져 내렸다

축사가 무너지고 소 100마리가 죽었어도 몇 억짜리 버섯사가 무너졌어도
최대 보상액은 5000만원에 불과하여 재해 전으로 원상복구하는건 불가능하
다

비닐하우스 역시 내부 작물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대파비, 농약대 명목으로
일부 지원만 있으며 하우스 보험을 든 경우 그 자리에 다시 하우스를 지은
후에야 보험비가 지급되는데 보험금은 무너지기전 하우스 감가상각비를 반
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새 하우스를 지은 비용 전부가 나오지 않아 하우

스 짓기를 포기한 농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기후위기로 재해를 입은 농민이 다시 농사지을수 있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전남 각지에서 농지 태양광 설치 문제는 농민들의 농사지을 권리를 빼앗고 있다.

우선 염해 간척지로 판정이 나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법이 통과된 이후 미질 좋은 쌀을 생산해 내던 간척지들이 태양광으로 덮여 소작농들이 쫓겨나고 있다

여기에 김승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농 태양광법이 통과된다면 절대농지에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고 임차농들은 쫓겨날 것이며 농촌 경관은 훼손될 것이다. . 우리 농민의 70%가 임차농이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것은 임차농 퇴출법이 될 것이다.

기후, 건강, 그리고 식량안보를 위한 먹거리 전환 Diet for Climate, Health, and Food Security

조 길예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CHO, Keal-Ye (Vegan Climate Action Network)

1) “기후 비상사태가 아니라 행성의 비상사태이다” (Not a Climate Emergency, but a Planetary Emergency)

기후위기는 오늘 논의 될 재난과 식량, 농민의 권리를 비롯 불평등과 정의, 팬데믹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이슈를 가장 강력한 형태로 증폭시킬 인류의 거대 과제이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위기를 설명하는 데 기후비상사태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고 한다. 기후 뿐 아니라 행성의 전체 시스템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평균기온 상승 속도가 예상롭지 않고, 기후를 조절하는 생태계의 거점 시스템들이 무너지면서 생태계 상호작용의 도미노(Feedback Effects)가 시작되고 있다.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해 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에 더해, 기 진행된 지구온난화가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 “기후변화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급작스런 돌변 sudden surprise이 발생할 수 있다”

영구동토층이 녹아 생긴 호수 표면에는 메탄 버블이 올라오고, 시베리아 바다에서도 메탄이 분출되어, 북극의 메탄 농도는 전체 평균의 9배나 높아졌다. 가열된 북극의 기온은 그린란드 빙하를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게 하는가 하면, 비까지 내려 해빙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온난화 때문에 빠짝 마른 수목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대형산불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야생의 서식처를 초토화 시키고 인간의 삶을 위협해 들어오고 있다.

지난 여름 유럽에서 발생한 홍수는 이제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해수면은 이제 겨우 몇 센티 상승했을 뿐인데, 해양의 물리학적 환경 변화로 해안침식이 발생하여 불과 몇 주만에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해안가에 위치한 저택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선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급작스런 돌변이 나타날 수 있다.

3) “메탄을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기후파국에 직면하라 Reduce Methane or Face Climate Catastrophe”

얼마 전 발표된 IPCC 6차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이산화탄소만큼 메탄이 기후변화에 주된 원인제공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IPCC 6th)

UNEP 역시 올해 5월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지금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향후 10년 간은 단기성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메탄을 대폭, 극적으로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메탄은 인간의 건강에도 해로운 대류권 오존의 주 발생원이기도 하여, 기후와 건강을 위해 메탄 감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대두되고 있다.(UNEP/CCAC 2021)

2019년 BioScience지에 실린 인류를 위한 경고에서 과학자들은 인류가 노력해야 할 먹거리 영역의 해법으로 식물성 식단 위주(mostly plant-based diet)의 식생활을 할 것과 축산경작지를 인간을 위한 식량경작지로 전환하고, 남을 농경지를 통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밖에 식품 폐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작 방식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

2021년 다시 BioScience지에 실린 논문에서 과학자들은 먹거리와 관련해서 반추가축의 수가 40억(4bn)을 넘어서 인간과 야생 포유동물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메탄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생활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019년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UN IPBES 보고서에서도 서식지 파괴, 생물다양성 손실의 원인으로 축산업과 산업적 어업을 지목하여, 육식을 대폭 감축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4) 지구를 구하려면, 먹거리를 바꿔라

Fixing Food to fix the Planet

육류 감축은 온실가스 배출량 깎을 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해 눈감고 있다. 채식이라는 의제는 부차적인 감축의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뉴딜의 메인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2005년/2007년 기준으로 조사해도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7.1~7.6 Gt을 넘으며, 현재의 추세라면 2050년에는 76%가 증가하여, 12.5 Gt에 이를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육류 소비 감축 없이는 1.5℃는커녕 2℃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 한다.(채텀하우스 2015)

2019년 지속가능성 분야, 영양학 분야, 그리고 FAO, WHO, 정책연구소의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EAT-LANCET 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행성의 지속가능성과 인류의 건강을 위해 '식단의 대전환 A Great Food Transformation'이 시작되어야 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지역에서의 신속한 이해 약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AT-Lancet Commission, Food in the Anthropocene)

2020년 11월 Science에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는 기후위기는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오늘 당장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에 성공한다 해도, 식량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한 지점을 가르키고 있다. 지구를 구하려면, 먹거리를 바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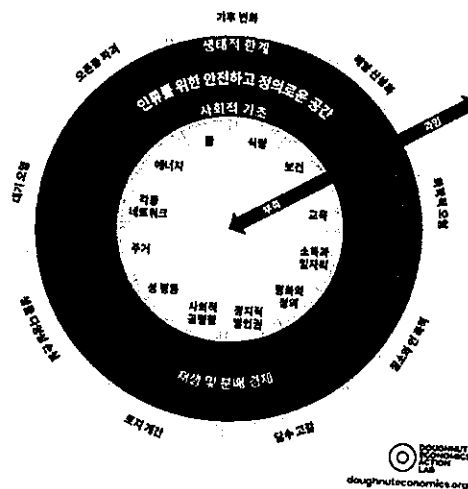
5) 누구에게나 건강한 먹거리가 허용된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전제조건 (planetary boundaries for food secure, sustainable world)

2015년 유엔은 누구에게나 에너지, 깨끗한 물,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이 보장되고, 평등을 누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세상을 위한 17가지 SDGs를 설정한 자 있다. 이 중에서 '기아 종식과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 상태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달성'을 목표로 하는 Goal 2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추구하는 Goal 13을 비롯해서 최소한 7개의 의제가 오늘 논의하는 농업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가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터

전이 안전한 지구한계 planetary boundaries의 경계 내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2014년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의하면, 아홉 군데의 지구한계 중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의 멸종률은 위험 수준을 넘어섰으며, 기후변화, 질소와 인의 생지화학적 유량, 토지이용 변화, 물부족 분야에서도 이미 위험 경계 지역에 들어선 상황이다. 그리고 이 위험 수준에 처한 5 군데는 모두 농업과 직접 연결된 분야이다. 특히 축산업은 '지구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 주범이다. 단일 산업 영역으로는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가장 많은 토지와 담수 blue water를 사용하며, 생물다양성 손실의 주범이자 질소와 인의 과부화로 인한 부영양화(eutrophication)의 주 원인제공자 이다. 결국 식단의 전환은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가는 전제조건인 셈이다.

화석연료에서 얻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인간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결국 인류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식단을 바꾸는 것 뿐이다. 그것도 늦기 전에,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인류가 겪는 고통, 경제계에 주어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기후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인류의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도 보탬이 된다. 특히 최근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를 비롯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는 첩경이기도 하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얻는 이익은 2050년 기준 5700억원(570 빌리언 달러)이며, 건강 개선을 통해 얻는 이익은 전세계 GDP의 2~3%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Marco Springmann et al. 2016)

6) 모두를 위한 식량, 행성의 모든 존재를 위한 물

Food for all, Water for every being on the Planet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7~16Kg의 사료 곡물이 필요하다. 적어도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37%는 인간이 아닌 가축 사료로 사용된다. 지구 상에서 굶주리는 인구는 8억 2천만명... 그러니까 인간은 굶는데 가축은 먹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식량 분배가 계속되는 한, 기아 종식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현재 전세계 강의 1/4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며, 지하수의 수계도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 온난화가 심각해질수록 강이나 호수는 물론 토양이 머금고 있던 수분도 더 빠르게 대기 중으로 증발하게 된다.

농업은 전체 담수의 70%를 사용하며, 육류의 물발자국이 가장 높다. 1Kg의 소고기 생산에는 15000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대두와 옥수수는 각각 2500리터와 1500리터의 물이 필요할 뿐이다. 현재 13억 인구가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수가 44억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목 마른 인류를 먹이기 위해서도 식단의 전환과 물 관리, 영농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7) 농업과 먹거리는 기후위기의 주 원인제공자이지만, 동시에 해결의 열쇠도 쥐고 있다.

농업, 특히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과 토지 개간, 부영양화, 물의 남용 등을 통해 기후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식단의 전환과 영농 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기후브레이크 다운을 막고 1.5℃ 이내로 기후를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더블 이익을 가져온다. 축산업은 전세계 농경지의 80%를 사용하는데, 만약 전세계가 육류와 유제품이 없는 식사로 전환할 경우, 전체 농경지의 75%가 남게 되며, 이 땅이 시간을 두고 자연초지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최대 80억톤에 이른다고 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CCUS와 같은 방식을 기후 해

법으로 내걸고 인류의 운명을 건 게임을 하는 대신, 식단의 전환과 영농방식 개선으로 생물다양성과 토양건강성이 회복되면, 이는 비록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인류를 구할, 수 만년에 걸쳐 입증된 가장 안전한 해법이 될 것이다.

먹거리 전환은 또한 기후위기와 자원고갈 같은 환경적 문제 뿐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NCD)과 비만, 암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윈윈 전략이 아닐 수 없다.

2050년 97억명에 이를 인류의 식품 수요를 충당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만큼의 수준으로 식량이 배분될 수 있으려면, 육식위주의 식생활은 거의 채식 수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Springmann et al, 2016)

다만 육류와 유제품 소비가 기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는 강력하지만, 국가 단위 GHG 계산법이 공급측면의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 행위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배출 부분도 평가하는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며, 관련해서 국제적인 논의와 합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